

#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자 : 1996. 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현행 "호적과태료부과기준"이 시·군의 "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"와 대법원의 "호적법시행규칙"에 이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될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현행 "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"상의 "과태료부과기준"을 삭제하고 "호적법시행규칙"의 "과태료부과기준"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현행 조례상의 【별표2】"과태료부과기준"을 삭제하고,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【별표】"과태료 부과기준"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함 (조례안 제4조)
- 【별지 제1호서식】해태이유서중 "해태기간(1월미만, 1월이상 3월미만, 3월이상 6월미만, 6월이상)을 "해태기간"으로 함.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4. 신.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자료 : 붙임

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('95. 12. 26 대법원 규칙 제1411호) 1부.

##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, 읍·면장은 규칙 제52조 제6항【별표】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

“【별표2】”를 삭제하고, 【별지제1호서식】해태이유서중 “해태기간(1월미만, 1월이상 3월미만, 3월이상6월미만, 6월이상)”을 “해태기간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<p>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①시장, 읍·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을 참작하여야 하며, 과태료 부과기준은 【별표2】와 같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【별표2】 과태료 부과기준(제4조제1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해태기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태료</th> </tr> <tr> <td></td> <th style="width: 35%;">제130조 위반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제131조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월미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월이상 3월미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월이상 3월미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,000원</td> </tr> <tr> <td>6월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【별지제1호서식】 해태이유서</p> <p>1. &lt;생략&gt; 2. &lt;생략&gt; 3. 사건발생상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건의 표시:</li> <li>· 사건발생년월일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li> <li>· 사건신고년월일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li> <li>· 해태기간(1월미만, 1월이상3월미만, 3월이상6월미만, 6월이상)</li> </ul>	해태기간	과태료		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	1월미만	10,000원	20,000원	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	40,000원	1월이상 3월미만	30,000원	60,000원	6월이상	50,000원	100,000원	<p>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 ① 시장, 읍·면장은 규칙 제52조제6항 【별표】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【별표2】 &lt;삭제&gt;</p> <p>【별지제1호서식】 해태이유서</p> <p>1. &lt;현행과 같음&gt; 2. &lt;현행과 같음&gt; 3. ----- ----- ----- : ----- ----- : -----</p> <p>· 해태기간 :</p>
해태기간	과태료																	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																	
1월미만	10,000원	20,000원																	
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	40,000원																	
1월이상 3월미만	30,000원	60,000원																	
6월이상	50,000원	100,000원																	

## 참 고 자 료

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95년12월26일

대 법 원 장      윤      관

◎ 대법원규칙 제1,411호

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

호적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24조의2 (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등초본의 청구)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이나 초본의 청구는 본적지의 시·읍·면이나 시관할 등에 이를 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의 신고서 부록중 양식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증인란 중 본적을 각각 삭제한다.

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하며,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6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④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·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 시장·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제86조제3항 제1호 중 "출생연월일"을 삭제한다.

제8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의 확인서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.

제90조제2항 제1호 중 "출생연월일"을 삭제하고, 동조제3항 중 "교부하여야 한다"를 "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     칙

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 지 >

【별표】

과태료 부과기준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7일미만	10,000원	20,000원
7일이상1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1월이상3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3월이상6월미만	40,000원	80,000원
6월이상	50,000원	100,000원